

서울특별시 9호선 2·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9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도시철도 9호선 2·3단계 운영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개화역~신논현역을 운영하는 기존 9호선 구간을 신논현역~종합운동장(2단계)~보훈병원(3단계)까지 연장 운영하는 사무로
- 2014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9호선 2·3단계 재위탁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9호선 2·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도시철도법 제3조(적용범위), 제42조(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
- 필요성
 - 철도운영은 고도의 전문성과 운행의 노하우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 경험이 있는 철도운영자에게 운영을 맡김으로써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통해 운영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(도시철도법 제3조 제4호)

- 도시철도 9호선 2·3단계구간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운송
-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
- 도시철도시설의 유지·보수, 임대사업, 옥외광고업 등 도시철도부대사업

라. 위탁기간 : 3년('20.9.1.~ '23.8.31.)

※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'14. 9. 5.~'17.11.28. (3년, 서울메트로)
- 2차 : '17.11.29.~'20. 8.31. (3년, 서울교통공사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바. 위탁비용 : 결산자료 비교분석하여 산출

- 지난 3년간 결산자료 및 동일업종 운영기관별 원가산출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산출 예정 ※ 지난 민간위탁 비용 : 893억원
- 시 소요예산은 위탁비용과 운영수입간 차액을 지원

※ 소요예산 = 운영비용(위탁수수료 포함) - 실제수입

▶ 사후 정산으로 운영 이익 발생 시 환수

※ '20년 민간위탁금 예산 : 약 180억원

사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- '20.5월 수시심의 신청 중이며 5월중 결과 통보 예정

아. 기대효과

- 전문기관의 운영·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안전·서비스 품질 향상
- 운영사 간 경쟁 도입으로 혁신적 운영방안 마련 유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도시철도법」 제3조 제3항

제3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

○ 「도시철도법」 제42조

제42조(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: 종합성과평가보고서 제출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사무로, 성과보고서를 종합성과평가보고서로 같음

※ 작성자 : 도시철도과 민자철도운영팀 한호정(☎ 2133-4357)